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0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로 7017」은 낡은 고가도로를 재생하여 수목이 있는 공중 보행도로로 조성한 서울시의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으로, '17년 5월 개장 후 市 직접 운영을 통해 조기 안정화 달성, 시민사회 협업 추진 등 민간위탁 기반을 구축하였음
- 나. 단순 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지역사회 유기적 연결,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등 서울로의 역할 재정립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울로 7017」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민사회 거버넌스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위탁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시민사회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경영·마케팅 부문에 민간단체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국제 관광 명소화 등 서울로 비전 달성에 기여

라. 위탁사무 내용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업무 전반

- 경 영 관 리 : 행정, 회계, 재산관리, 편의시설 운영 등
- 프로그래밍·마케팅 : 홍보·마케팅, 축제·이벤트, 문화·프로그램, 이용허가, 자원봉사 운영 등
- 시 설 관 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식물 관리, 환경 정비 등

마.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중구 남대문로5가 ~ 만리동1가 62 일대
- 관 리 면 적 : 22,916.7㎡(폭 10.3m, 최고높이 17m, 길이 1,024m)  
 ※ 고가 10,720.4㎡, 만리동광장 10,353.1㎡, 퇴계로 교통섬 1,843.2㎡
- 위 치 도



바. 민간위탁 기간 : 3년 이내(2019.민간위탁 시점 ~ 2021.12.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소요예산 : 약 1,530백만 원('19년)

내역	금액	산출기준
합계	1,530,000	
인건비	681,674	기본급, 제수당 ※ 수탁단체 임직원 17명, 편의시설 운영 8명, 기간제 18명
운영경비	256,919	보험료, 임차료, 교통통신비, 소모품비 등
일반관리비	56,316	용역원가(인건비+운영경비)의 6%
부가세	99,491	총원가(인건비+운영경비+일반관리비)의 10%
편의시설 재료비	116,000	'17~'18년 실지출액 기준
프로그램 운영비	319,600	'17~'18년 편성 및 지출액 기준

※ 예산안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18.9.18. 심의)

- 의견 : 민간위탁으로 인한 원가절감 등 효과가 인정되므로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19년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팀 이진숙 (☎ 2133-2020)